

일본의 수의사 수급의 현황과 수의사 자격

| 김효룡 역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본글은 일본수의사회지 2004년6월호에 게재된 大森伸男(일본수의사회 전무이사 카나가와현 수의사회 회원)선생의 기사를 일본수의사회 사업부에 수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古賀俊伸선생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번역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각주는 역사가 이해를 돋기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1. 서론

1984년 수의학교육연한 연장에 의해 6년 일괄교육체제가 실현되고 6년제 수의사가 수의계에 배출되고부터 15년이 경과되고 있다. 그동안, 수의학교육의 실시체제는, 특히 국립지방대학에서 수의학교육과정이 농학부중의 1학과로 위치매김한 채로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 대표하고 있는바와 같이, 여전히 소규모에 지나지 않는 시설·설비를 위시하여 교원 강좌체제 등 모든 교육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2년에 수의료법이 제정되고, 국가와 도도부현¹⁾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계획

적인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 정비를 기하기 위한 “수의료체제정비계획제도”가 발족하여 10여년이 경과했다. 2000년에는 국가에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책정되었지만, 지역계획으로서의 도도부현계획의 진척 자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점에서도 상징되는 바와 같이, 지역의 중심진료시설의 정비, 수급동향에 맞춘 수의사의 적정배치, 동물의료기술의 고도화·다양화 요청에 알맞은 진료수의사에 대한 계획적인 임상연수와 야간·휴일 진료제공체제의 정비, 나아가서는 동물의료직업윤리대책 등의 현장에서의 대응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계획제도 자체도 형식화에 치우쳤다고 지적된지 오래이다.

1) 都道府縣,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도, (동경도·북해도·오사카부·교토부·43개현)

이같은 상황중에, 최근의 동물의료를 감싸는 사정을 보면, 식품의 안전확보와 해외로부터의 동물감염증의 침입방지, 인수공통감염증의 진단·예방 체제의 정비 등의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준비가 국내외에서 중요과제로 되고, 국내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의 공생사회 의 구축을 지향하는데 있어서의 동물애호복지대책, 야생동물보호대책, 나아가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식품교육과 생명존중 등의 정신 교육추진에 있어 동물의 적절한사육대책 등 동물의료에 대한 요청은 다양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수의사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무게를 더해오고 있다.

또, 수의사 자격을 지향하여 수의학 교육과 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국공사립 16대학(4월부터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이행)의 입학경쟁률의 격화와 함께, 이른바 편차치 우수자의 입학희망이 뒤를 잊고, 입학난이도는 의학부에 근접해 간다고 되어있다.

수의학계 대학에서는 이들의 기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의학교육의 제공체제의 정비(강좌·교원체제, 임상교육 및 가축위생, 공중위생의 실습·응용부분의 커리큘럼 정비와 가축병원의 동물의료임상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등)가, 또, 특히 소동물의료분야에서는,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신규졸업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졸업후 임상연수를 위시하여, 전문 분야화와 고도동물의료기술에 대응하는 수의사전문의의 양성, 동물의료기술의 고위·평

준화를 위한 생애연수실시체제의 충실·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의학교육실시체제의 발본적인 정비와 동시에, 수의사가 산업동물임상, 소동물임상, 축산·가축위생, 공중위생, 대학·연구기관 등의 수의학술·연구영역의 각 직업분야에서, 국가자격을 가지고 동물의료에 관한 고도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과제는 적지 않지만, 이들의 과제를 검토·의논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자료로서, (1)수의사의 수급동향과 (2)수의사의 권한과 의무관계, 나아가서는 수의사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직종의 현황 등에 대하여 해설한다.

2. 수의사의 수급동향

(1) 공급의 현황

전국 16개의 국공사립 수의학계대학의 수의학 과정 졸업자는 매년 1,100명 수준인 반면, 수의사국가시험합격자는 1000명 전후의 수준(국가시험합격율 80~85%)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것은, 종전부터 대학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에 대하여는, 수급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 의사, 치과의사, 교원, 수의사에 대하여는, 대략 필요로 하는 정비가 이미 달성되어 있으므로, 그 확충은 예정이 없다.”라는 대학심의회답신에 의해, 수의계 대학의 신증설 등의 인기가 되지 않은 사실 때문이지만, 대학설치

시의 입학정원 취급기준(문부과학성 고시)에 있어서도, 대학의 설치 또는 수용정원에 대한 증원 인가의 심사에 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에 대하여는, 그 양성에 관련되는 대학의 설치 또는 수용정원 증가가 아닐 것”으로 되어 있고, 국공사립대학 수의학과정의 입학 정원총수는 930명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실제 매년도의 입학자는 1,100명 수준으로 정원 총수에 대하여 2~3할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의사의 직업영역별 분포 (표1 참조)

가. 최근 시점의 수의사 신고총수는,

[표1] 수의사의 취업상황의 추이

단위:인, (%)

		①1992년12월	②2002년12월	③ 대 비 ②÷①×100
수의사	신고자 총수	28,252 (100)	30,723(100)	(109)
	공무원	9,607 (34)	9,529(31)	(99)
	국가공무원	715(3)	739(2)	(103)
	지방공무원	8,891(31)	8,790(29)	(99)
	민간단체·회사 직원 등	6,515(23)	5,309(17)	(61)
	농협	815(3)	479(2)	(59)
	농업공제단체	2,120(6)	1,884(6)	(69)
	회사	2,347(6)	1,601(5)	(68)
	경마단체, 사립대학 등	1,233(4)	1,345(4)	(109)
	개인진료시설	8,697(31)	11,566(36)	(133)
	기 타	259(1)	326(1)	(126)
	수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3,175(11)	3,993(13)	(126)
진료	수의사 총수	11,765(42)	14,159(46)	(120)
	산업동물진료수의사 (단체·개인개업·시정촌 ²⁾ 회사)	5,364(19)	4,590(15)	(66)
	소동물(개, 고양이)진료수의사	6,365(22)	9,476(31)	(149)
	기타동물의 진료수의사	46(−)	93(1)	(202)

2) 우리나라 시·군·면 정도의 지방단체

시설 33% 증가 (4)수의업무비종사자 26% 증가했다. 증가의 주체는, 수의사 신고총수의 46%를 점하는 동물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년전에 비하여 20% 증가, 이중 소동 물진료가 49% 증가한데 대하여 산업동물진료는 14% 감소되었다. 이상과 같은 수요동향을 반영하여, 수의사 신고총수에서 점하는 진료수의사의 직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전의 42%에서 46%로 증가, 그중 소동 물진료수의사의 비율이 22%에서 31%로 증가되는 한편, 산업동물진료수의사는 19%에서 15%로 감소되어오고 있다.

(3) 수요동향 (표2 참조)

가. 수의사가 취업하는 각 직업영역에 있어 수의사 자격을 필수로 하는 직종은, (1)사육동물

의 진료부문, (2)공무원 중,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원³⁾, 도축검사원, 광견병예방원 등으로, 이들의 직업영역종사자는 수의사 신고총수의 74%로 되어있다.

수의사자격을 필수로 하는 직업영역의 수요는, 제1의적으로 (1)동물의 사육두수 및 사양자수의 동향과 (2)동물의료의 질의 향상 등 그제 공체제에 대한 동물사육자 등의 요청에 좌우되지만, 동물의 사양동향 등의 추이를 보면, 산업동물은 유용우, 육용우, 돼지, 닭의 사양두(수)수, 사양호수 공히 일관되게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사양호수는 최근 10년동안 반감되고 있다. 한편, 개, 고양이 등 소동물에 대하여 보면, 애완동물붐을 배경으로 사양호수 비율(사육율)은 개 18%, 고양이 12%로 상당한 비율로 사육되어오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개, 고양이 공히

[표2]동물의 사육두(수)수 및 호수의 추이

		①1993년2월	②2003년2월	③대비(%) (②÷①×100)	단위:호수,두(수)수 ④과거최고사육호수 · 두(수)수 ·(년)
가	유용우	호수 50,900	30,000	59	417,640 (1963)
	두수 2,068,000	1,719,000	83	2,111,000 (1985)	
축	육용우	호수 199,000	98,100	49	2,319,270 (1956)
	두수 2,966,000	2,804,000	95	2,971,000 (1994)	
가정	돼지	호수 25,300	9,000	36	1,025,260 (1962)
	두수 10,783,000	9,725,000	90	11,866,000 (1998)	
동물	닭	호수 12,681	7,139	56	4,508,000 (1955)
	두수 282,189,000	241,029,000	85	293,408,000 (1988)	
		①1994년10월	②2003년10월	③대비(%) (②÷①×100)	④과거최고사육두수(년)
동물	개	9,067,000	11,137,000	123	11,137,000 (2003)
	고양이	7,178,000	8,087,000	113	8,453,000 (1995)

3) 가축방역관은 중앙공무원(농림수산성 위생과, 동물검역소 근무), 가축방역원은 지방공무원(가축보건위생소 근무)을 말함.

1997년을 피크로 정체되지 않고 감소 경향.

그러나, 2003년 개의 사육두수는 11,137천두(추계치)로 과거 최고수준이라고 되어있다.

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수의사 1인당의 동물 사육두수는 (1)가축(소, 면양, 말, 돼지)에 대하여, 미국 1,980, 호주 5,350, 프랑스 1,822, 영국 729인데 대하여, 일본 182로 되어있고, (2)개, 고양이에 대하여, 미국 2,200, 호주 807, 프랑-

스 1,478, 영국 1,020인데 대하여 일본 549로 되어있어, 1사람의 수의사가 커버하는 동물의 볼륨은 여러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준으로 되어있다.

(4) 공급의 동향 (수의학과정 졸업자의 취업상황) (표3 참조)

2002년도의 수의학과정 신규졸업자(2003년

[표3] 수의학 교육과정 신규졸업자수의 취업상황의 추이

단위:인, (%)

	①1993년3월 졸업	②2003년3월 졸업	③ 대 비 ②÷①×100
총수	1,010(100)	1,064(100)	(105)
공무원	204(20)	200(19)	(98)
국가공무원	25(2)	20(2)	(80)
지방공무원	179(18)	180(17)	(100)
민간단체·회사 직원 등	205(20)	108(10)	(53)
독립행정법인	-(-)	0(-)	(-)
농협	7(1)	4(-)	(57)
농업공제단체	84(8)	28(3)	(33)
회사(제약, 유업, 식육, 사료, 실험동물 등)	114(11)	76(7)	(67)
개인진료 시설	344(34)	496(47)	(144)
산업동물진료	11(1)	8(1)	(73)
소동물진료	320(32)	477(45)	(145)
산업동물+소동물진료	5(-)	11(1)	(220)
기타	164(16)	215(20)	(131)
경마관계단체	16(2)	9(1)	(56)
사립대학	2(-)	4(-)	(200)
연구소	7(1)	4(-)	(57)
연구생·청강생	48(5)	74(7)	(154)
대학원등 진학	62(6)	87(8)	(140)
해외	6(1)	2(-)	(33)
기타	23(2)	35(3)	(152)
미정·불명	93(9)	45(4)	(48)

3월 졸업)의 취업상황은 (1)공무원 19% (2)민간단체·회사직원 10% (3)개인진료시설 47%로 되어있고, 이를 10년전과 비교하면, (1)공무원은 거의 같은 수준 (2)민간단체·회사직원 7%감소되었으며, 감소의 주체는 농업공제단체에서 67% 감소 (3)개인진료시설은 44% 증가되었으며, 증가의 요인은, 개인진료시설취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소동물 진료수의사 지망자로 그 비율은 45% 증가. 소동물진료수의사 지망자는 최근 7~8년에 만 매년 신규졸업자의 4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관되게 증가경향으로 추이해오고 있다.

(5) 수급의 현황과 예상

가. 현재, 수의학과정의 신규졸업자는 매년 1,100명 정도이고, 수의사면허 신규취득자는 1,000명 정도로 거의 일정한데 대하여, 수의사의 신고총수는 최근 10년에 9% 증가(년율 0.87%)되고, 이 가운데 (1)종래 10%정도의 비율로 점했던 수의업무비종사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10년전에 비하여 26% 증가(년율 2.3%)

또, (2)신규졸업자에서 보아도,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의 취업자가 취업미정·불명자 를 포함하여, 매년, 10% 수준 존재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최근에 소동물진료업무를 지향하는 자는 일관되게 증가기조로 되어있어 (신규졸업자 전체의 4할을 초과하는 수준), 이 분야에서의 수급은 완화되는 징후를 나타내고, 지역에 따라서는, 과밀·과잉감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있다.

나. 수의사의 신고총수가 30,723명으로 되어있는 가운데, 매년 1,000~1,100명 즉 전체의 3~4% 비율을 점하는 신규수의사가 착실하게 더해지고 있어 수의사의 전체수급에 대하여 펑박감은 없다.

공급면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의사의 직업영역분포가 (1)공무원 (2)농업단체, 민간회사, 대학 등의 직원 (3)진료개업수의사로 3분할 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의 BSE검사 대응이 시작되어 공무원수의사와 민간회사 연구직 등의 수의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이는, 의사에 있어 직업영역 편재문제의 대처와 같은 개별정책배려에 의해 시정해야 할 과제로서 취급하고, 구체적으로는 (1)부족감이 있다고 되어있는 직업영역의 전문직인 공무원수의사와 민간회사 연구직에 대한 처우의 개선 (2)검사와 임상업무에 관한 보조자의 취급에 대한 제도상의 정비를 도모하여, 이를 보조자의 활용에 의한 지원 체제의 정비 (3)수의학계 대학에 있어 가축 위생, 공중위생학 등의 응용수의학교육의 실시체제의 정비에 의한 신규졸업자의 공무원 직업영역부문에의 유도 등에 의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의 수의사 수급사정에서 보아, 또 수의학교육의 질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되는 가운데 대학의 수의학과정의 입학정원 총수에 대하여는, 의사 등의 다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과 같이, 현상유지의 정책배려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수의사 자격과 법령에 의한 수의사자격이 요구되는 직종의 관계

(1) 수의사의 권한과 의무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수의사 이외의 자가 “사육동물의 진료를 업으로 하여 실시하는 행위(금전적 대가를 동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반복, 계속 혹은 그 의지를 가지고 사육동물에 대한

진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진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기타의 수의학적 판단과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동물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서 실행상의 해석이 되고, “진료행위”와 (1)의약품의 “조제행위” (2)동물의 사체의 “검안행위” (3)동물의 영양, 사육관리,

[표4] 법령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1) 권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의 적용제외를 포함한다.)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① “수의사”의 업무독점	사육동물(소, 돼지 등의 산업동물 및 개, 고양이 등의 가정동물)의 진료(가축 제내수정난의 채취·처리, 난소채취를 포함한다.)	수의사법 (가축 개량증식법)
② “수의사”,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전관사항	자기의 진료에 의한 처방전의 교부 (지시를 포함한다.)	수의사법, 약사법
	자기의 처방전에 의해 스스로 실시하는 조제	약제사법
	진료업무를 위한 의약품인 각성제 원료의 소지	각성제 단속법
③ “수의사”的 전관업무. 단, 가축인공수정사 에게도 하용되어있는 업무	[1]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채취·처리·주입, 도체로부터의 난소의 채취 [2] 가축미수정난의 채취·처리, 체외수정, 가축수정난의 이식	
④ “수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의 적용제외(예외)	[1] 사용기준이 정해진 동물용의약품에 요구되는 사용기준에 의한 사용의 예외(‘수의사’가 대상동물의 질병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어쩔수없다고 판단된 경우의 성령 ⁶⁾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사용(특례사용) [2] 무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금지의 예외(‘수의사’가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조 등) [3] 용기등에 제조업자가 기재되어있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의 식용동물에의 사용금지의 예외(‘수의사’가 진료에 관계되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대상동물에 사용하는 경우)	약사법

4) 裝蹄·削蹄

5) 省令, 우리나라의 부령

(2) 의무

근거법령	내 용	대상자
①수의사법	[1]진료에 의한 진단서의 교부 등의 의무 [2]진료의 응소의무 [3]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검안서의 교부의무 [4]진료부, 검안부의 기재, 보존의무 [5]사육동물 사육자에 대한 보건위생 지도의무 [6]면허를 받은후의 대학등에서 임상연수 실시의 노력의무 [7]취업상황 등의 신고의무	'수의사' 또는 진료를 업무로 하는 '수의사'
②가축개량증식법	[1]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체내수정난등의 채취시에 있어 검사의 실시, 증명서의 교부, 이상발견시 보고의무 [2]가축인공수정부의 기재의무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의 채취 또는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의사'
③가축전염병예방법	특정의 가축이 환축 또는 의사환축으로 된 것을 발견한때의 신고의무	동물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④소해면상뇌증대책 특별조치법	폐사한 소의 신고의무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⑤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특정의 동물에 대하여 감염증에 걸렸거나, 또는 걸렸을 의심이 있다고 진단한때의 신고의무 [2]감염증의 예방에 관하여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과 예방에 기여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
⑥광견병예방법	[1]광견병에 걸린 개 혹은 걸렸을 의심이 있는 개 또는 이들에 개 등에 물린 개 등의 신고의무 [2]광견병예방원의 협력요청에 따를 의무	동물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⑦약사법	[1]의약품의 부작용의 보고의무, 의약품의 정보수집제공의 의무 [2]의약품을 수의사의 특례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특례사용)의 출하제한 기간의 지시	의약품을 사용한 '수의사'

투약, 예방위생 등에 관한 “보건위생지도행위”
(4)가축인공수정, 장제, 삭제⁴⁾ 등의 “진료유사 행위”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수의사법 등의 법령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권한과 의무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이중 (1)수의사의 권한은 수의사의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수의사의 업무 독점”으로 되는

점에서 “일반적 금지행위 중, 수의사의 특례(예외)에 의한 적용제외”까지를 열거하면 표4의 (1)의 ①에서 ④’ 까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들의 권한의 근거로 되는 규정은, 수의사의 이른바 “진료권”, “진료에 관한 재량권”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2)수의사가 동물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수의사의 의무로서 부과되어지는 사항으로서는, 표4의 (2)의 ‘①’에서 ‘⑥’ 까지 이지만, 이에 추가하여, 수의사에 대한, 수의사법 등의 동물의료행위가 직접 관계되는 법령에 의한 특별의무(진료시설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와 함께, 수의사가 행한 다른 일반 법령을 포함하는 위반행위와 직업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수의사면허의 취소, 수의업무의 정지를 포함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된다고

되어있다.

(2)수의사자격과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소 등의 수의사를 필히 두어야하는 직종과의 관계

사육동물에 대한 진료가 수의사에 의한 업무독점으로 되어있는 점에 대해, 법령에 의한 사육동물의 진료에 관한 검사, 감시·지도 관리 등의 일정한 권한행위의 집행을

[표5]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꼭 있어야할 것이 요구되는 직종과 수의사자격의 관계

(1)자격요건이 수의사만에 한정되는 것

관직명 등	배치선	주요직무	근거법령
①가축보건위생소장	도도부현	지방에서의 가축위생의 향상, 축산 진흥 등의 사무	가축보건위생소법
②가축보건위생소의 수의사직원	가축보건위생소		
③도축검사원	도도부현	도축검사, 도축장의 출입검사, 병축 등의 도축·해체금지명령 등	도축장법
④광견병예방원	도도부현	광견병의 예방, 만연방지 사무	광견병예방법
⑤식조검사 ⁶⁾ 실시직원 (검사원)	도도부현(후생대신 지정검사 기관 포함)	식조검사, 식조처리장의 출입검사	식조검사법

(2)자격요건이 원칙적으로 수의사에 한정되는 것

관직명 등	배치선	주요직무	근거법령
①가축방역관	농림수산성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 만연방지사무, 수출입검역사무	가축전염병예방법
②가축방역원	도도부현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 만연방지사무	가축전염병예방법
③동물애호관리원	도도부현	동물취급업의 출입검사, 기타 동물애호·관리사무	동물애호 및 관리법

6) 食鳥検査, 도계검사

담당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수의사로 정한 관직 등을 정리하면 표5와 같고, 또, 법령에 의한 민간사업소 등에 배치가 요구되는 수의사 자격이 관련되는 직종 및 수의사 자격이 해당하는 면허의 부여요건으로 되는 자격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또한, 수의사는 상기에 열거하는 수의사 자격이 필수로 되는 직종 이외에, 의약품

개발·연구부문을 위시하여, 대학 등의 교육·연구기관, 식품 등의 품질관리, 동물 애호, 야생동물보호관리, 자연환경보전부문 등의 폭넓은 직업영역에서 동물 및 동물위생, 나아가서는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기술자·연구자 등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자격요건에 수의사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관직명 등	배치선	주요직무	근거법령
①식품위생감시원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시	식품관련영업시설의 출입 검사, 수거, 감시·지도업무	식품위생법
②약사감시원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시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출입검사, 수거, 명령, 회수 등	약사법
③보건소직원	도도부현, 지정도시 ⁷⁾ 의 보건소	지역보건대책등의 사무	지역보건법
④(독)가축개량센	(독)가축개량센터	농수대신의 명예 의해 실시하는 가축인공수정소 등에 출입검사 등	가축개량증식법

[표6] 법령에 의해 특정의 민간사업소 등에 배치가 요구되는 직종과 수의사자격의 관계

(1) 자격요건이 수의사만에 한정되는 것

직명 등	주요직무	근거법령
①사육동물진료시설에 배치되는 '관리자수의사'	수의사가 관리자수의사로서 사육동물진료시설을 관리	수의료법
②가축시장에 배치되는 '검사수의사'	수의사가 검사수의사로서 가축시장의 거래 가축에 대하여 질병이환 유무등을 검사	가축거래법

7)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는 市



(2) 자격요건에 수의사가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

직명 등	주요직무	근거법령
①의약품(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제조소에 배치하는 '의약품제조관리자'	수의사가 의약품제조관리자로서 약 제사에 대신하여 의약품의 제조를 현지에서 관리	동물용의약품등 단속 규칙
②가축인공수정소에 배치하는 '관리자수의사'	수의사가 관리자수의사로서 가축인공수정소를 관리	가축개량증식법
③사료제조소에 배치하는 '사료제조관리자'	수의사가 사료제조관리자로서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를 현지에서 관리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
④식조처리장에 배치하는 '식조처리위생관리자'	수의사가 식조처리위생관리자로서 식조처리장에서 식조처리의 위생관리	식조검사법
⑤유제품등 특정의 식품제조시설 등에 배치되는 '식품위생관리자'	수의사가 식품위생관리자로서 식품제조, 가공시설에서 식품제조, 가공의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⑥보조견 훈련사업자의 보조견 훈련에 있어 '수의사' 와의 연대 확보	수의사가 훈련사업자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보조견의 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의 적정을 확보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⑦보조견 인정을 실시하는 지정법인의 심사위원회에 '수의사'의 참가	수의사가 지정법인이 실시하는 보조견의 인정에 관한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인정의 적정을 확보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3) '수의사자격' 이 면허의 부여요건이 되어있는 것

면허(자격)	주요직무	근거법령
①위생검사기사	수의사가 후생대신의 면허를 받아 위생검사기사로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미생물학적검사 등의 검사를 업무로서 실시	임상검사기사, 위생검사 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②마약 사용자	수의사가 도도부현지사의 면허를 받아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업무상 마약을 사용 또는 처방전의 교부 등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③마약 관리자	수의사가 도도부현지사의 면허를 받아 마약진료시설에서 마약을 업무상 관리	